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

이해진* 김제완**

Keywords

영농조합법인(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 조합원의 책임(the liability of the members),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the CEO's conflict of interest), 조직변경(organizational change)

Abstract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is a form of an agricultural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ies Business Entitie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basic rules of the Korean Civil Act regarding partnership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differs from a partnership in several respects, such as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legal entity, establishment requirements, and scope of liabil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and the rights and liabilities of its members—specifically, how it differs from similar legal entities such as partnership, agricultural company and how much it should bear corporate debts when it closes due to insolvency, liabilities for its CEO's conflict of interest, or the liabilities of its members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hange.

차례

1. 들어가며
2.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법적 성격
3.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권리
4.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5. 결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기농식품벤처창업센터 전임연구원, 법학박사(민법전공)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교신저자. e-mail: jkim@korea.ac.kr

1. 들어가며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¹의 한 형태이다.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합법적·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이후 세계 감면, 용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과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마상진 외 2020),² 부실법인 수가 운영법인 수보다 많고(뉴시스 2021. 5. 6.; 아주경제 2021. 5. 14.),³ 목적 외 사업 영위,⁴ 보조금 부당 수령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1. 5. 10.).

또한 재무지표는 중소기업과 비교 시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익성과 성장성은 낮은 수준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1).⁵ 이와 같은 수익성과 성장성 악화는 영농조합법인의 존속이나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경영 상태 악화 등이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조합원은 그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채권자와 분쟁하기도 한다. 만일, 영농조합법인을 민법상 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제도와 구별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 성격이 무엇이나에 따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조합원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책임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으로 하되 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1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2 농업법인 종사자가 전체 농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1.4%였던 것이 2010년에는 4.0%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11.6%로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의 매출이 전체 농업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 기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2.4%였던 것이 2010년에는 7.2%, 2018년에는 15.6%에 이르고 있다.

3 2019년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41,413개소 중 41.9%가 운영 중이었고, 43.9%가 미운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감사원의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2016년)에 의하면, A영농조합법인은 대전지역 3개 오피스텔 31실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했고, B농업회사법인은 전북 무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C농업회사법인은 전북 무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했고 일부 농업법인은 농지매입 후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농지투기 사례도 있었다. 목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D사는 영농의사가 없으면서도 콩을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평택시로부터 발급받았다. 이후 D사는 다른 3개 농업법인과 함께 평택 인근 농지 2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 보유하다가 8개월 뒤 매매 차익 38억 원을 남기고 모두 팔았다.

5 2019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지표를 일반기업과 지표별로 비교하면,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영농조합법인이 135.9%, 일반 중소기업이 169.5%,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각각 1.2%, 3.5%, 성장성 지표인 매출증가율은 각각 -2.9%, 5.9%이다.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 유무, 설립요건, 책임범위, 세제상의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다.⁶

기존의 연구는 주로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분석이나 조세 감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연구가 많았으나, 영농조합법인 설립이나 운영 시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등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농업법인 제도 도입 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례를 여러 건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법에 의한 제도 도입과 판례에 의한 법리 형성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은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도나 폐업 시 조합원은 법인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효력은 어떠한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등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등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우리 법제를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련 판례와 논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는 어떠한지,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유사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등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본 후(제2장),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제3장), 책임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제4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6 영농조합법인과 민법상 조합과의 차이점은 2.2.1. 민법상 조합 참조.

2.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와 법적 성격

2.1. 영농조합법인의 실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업법인 수는 2019년 기준 총 23,315개이고, 이 중 영농조합법인이 10,230개(43.9%), 농업회사법인이 13,085개(56.1%)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업법인의 조직 형태는 영농조합법인 위주에서 농업회사법인 위주로 변화하고 있고, 사업 유형은 생산법인 위주에서 가공·유통 등 생산 외 법인 위주로 바뀌고 있다(통계청 2021).⁷ 또한 매년 설립법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당 출자자 수와 종사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법인당 출자금도 2019년 기준 2.2억 원이나, 5천만 원 미만이 29.8%, 1억 원 미만이 17%, 1억~5억 원 미만이 45.2%, 5억 원 이상이 7.9%이다(마상진 외 2020: 79).

표 1. 농업법인 조직형태 · 출자자 · 종사자 현황

구분		2000	2010	2015	2019
농업법인 전체		5,195	8,361	17,484	23,315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3,843 (74.0)	6,849 (81.9)	11,792 (67.4)	10,230 (43.9)
	농업회사법인	1,352 (26.0)	1,512 (18.1)	5,692 (32.6)	13,085 (56.1)
법인당 출자자	영농조합법인	22.3	17.8	12.8	15
	농업회사법인	6	18.5	7.4	6.4
법인당 종사자 수	영농조합법인	16.1	6.7	5.9	7.1
	농업회사법인	9.6	9.5	8.0	6.7

단위: 개, 명, %

자료: 통계청(2000~2019).

7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유형을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생산법인 비율은 47.4%에서 39.9%로 감소한 반면, 유통법인 비율은 21.6%에서 25.2%로, 가공법인 비율은 12.9%에서 18.9%로 증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상시 종사자는 4인 이하가 64%(1인 이하인 법인이 32.9%, 2~4인 31.1%, 10~49인 9.2%, 50인 이상 법인이 0.4%)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2000년 31.3%)한 반면 10인 이상은 감소하였다(2000년 20.1%, 2019년 10.6%). 또한 연령별 종사자는(2019년 기준) 50대 38.2%, 60대 26.3%, 70대 이상은 7.5%로 50대 이상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8년 68.9%, 2019년 72%).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19년 기준 농업회사법인의 자산은 20.4억 원으로 영농조합법인(11.28억 원)보다 많고, 부채 역시 농업회사법인(13.8억 원)이 영농조합법인(6.5억 원)보다 많았다. 농업회사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2009년까지 급상승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였고, 영농조합법인은 같은 기간 큰 변화가 없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마상진 외 2020: 67).

표 2. 농업법인 자산·부채·자본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결산 법인 수	2018년			결산 법인 수	2019년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전 체	20,689	1,838	1,051	588	22,147	1,641	1,060	580
영농조합법인	9,688	1,183	703	481	9,714	1,128	650	478
농업회사법인	11,001	2,039	1,357	682	12,433	2,041	1,380	6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19년 기준 농업법인조사보고서』.

2019년 기준 법인당 매출액은 11억 6천만 원, 영업이익 1,400만 원으로 매출은 2009년까지 소폭 증가하다 감소 추세이나, 영업이익은 2013년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마상진 외 2020: 69). 그런데 2019년 기준 영업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기업이 89.7%(적자기업이 46.4%, 1억 원 미만이 43.3%)이다.

표 3. 농업법인 경영수지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결산법인수	20,689	9,688	11,101	22,147	9,714	12,433
매출액	1,814	1,198	2,356	1,789	1,163	2,278
영업이익	36	23	47	22	14	28
당기순이익	36	34	37	14	23	8
매출액 영업이익률	2.0	1.9	2.0	1.2	1.2	1.2

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2019년 기준 농업법인조사보고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농업법인의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농업인의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법인경영 다각화 등을 위한 청년인력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위와 같은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과 더불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운영상의 법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도 중요하다. 즉,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성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탈퇴를 하거나 추가 출자를 기피하기도 하고, 조합채무를 개인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한다. 그리고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법인으로 조직변경 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조직변경 전 발생한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어떠한 특징이 있고, 민법상 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제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2.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 및 유사제도와의 비교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1항). 하지만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 충원되지 않으면 해산 사유가 된다(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 3).

의결권의 경우,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자 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은 출자한도에 제한 없이 출자는 가능하나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이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2항) 추가 출자를 기피할 수 있다(이해진 2015; 농림축산식품부 2019). 한편, 조합 법인에 출자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

지분·지위의 양도의 경우에도 영농조합법인은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원의 인적 특성이 중요시되고, 지분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협력이나 새로운 조합원 가입으로 기존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은 없다. 우리 법원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甲이 조합원의 제명결의에 대한 법원의 무효판결 이후에도 조합경영에서 일체 배제되어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조합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산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⁹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조합원의 탈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관 조항은 조합원의 탈퇴를 전면금지(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탈퇴 요건으로 조합원 총회의결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716조(임의탈퇴)에 위배되지 않는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i)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ii)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iii)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iv)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v)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9 제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합10585 판결.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甲) 제명을 결의하고 조합법인 운영에서 甲을 배제하고 있음에도 위 정관 조항을 들어 甲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위 정관 조항은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이 甲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甲에 한해서만 영농법인의 정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할 수 없다. 甲이 피고 조합법인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 정관 조항이 우선 적용되고, 甲이 피고 조합법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피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총회에서 원고(甲)의 탈퇴를 의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甲의 탈퇴로 인한 정산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와 같은 규정은 조합법인의 존속 및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탈퇴도 영농조합법인은 조합계약으로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¹⁰ 조합에 불리한 시기, 즉, 조합의 목적, 사업경영의 상황, 재산 상태, 경제계의 정세 등 제반 사정으로 보아 그 조합원이 그 시기에 탈퇴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이익이라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민법 제716조 제1항). 또한 조합원의 제명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할 수 있다(민법 제718조).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고, 공동구입, 공동 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나(농림축산식품부 2019),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고 결원 시 1년 내 미충원 시 해산 사유가 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2.2.1. 민법상 조합

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이 있다. 우리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같이 인적 결합이라는 점, 조합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가 제한된다는 점, 의결권이 1인 1표이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¹¹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계약의 법정 기재사항이 없고(민법 제703조), 등기사항도 없는 반면,

10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주로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주관적인 사정이 되겠지만, 사업의 부진, 신뢰관계의 파탄 등 조합 자체의 사정도 부득이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곽윤직 1997; 김재형 1997).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영농조합법인은 법정 등기사항이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및 제7항). 또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이 있고, 설립요건도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해야 하나,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원의 책임도 민법상 조합은 무한책임인 데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이 있으므로 인해 소송에서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법인 등기부에 목적과 조직, 대표자의 임기와 대표권에 대한 제한 등이 공시된다는 점, 재산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 법인세·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익명조합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공동기업 형태이나, 익명조합원에게만 출자 의무가 있고 재산의 소유 형태는 영업자의 단독 소유이다. 또한 익명조합원은 출자만 하면 더 이상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영업자는 단독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영업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참여 당사자 모두 출자의 의무가 있고 조합원 모두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이가 있다.

한편, 합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송옥렬 2021; 임재연 2020). 합자조합은 조합계약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고(상법 제86조의6) 일정한 등기사항이 있다는 점(상법 제86조의4), 법인격이 있다는 점, 합자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가 조합원의 합유(민법 제704조)라는 점 등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면서 조합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비농업인 포함 출자조합원은 출자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다르다.

2.2.2. 농업회사법인

우리 상법상 회사는 5가지 형태,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도 농업회사법인은 5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1항). 이들 형태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농업회사법인의 5가지 법적 형태 비교

구 분	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성 격	물적 결합	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설립요건	1인 이상	2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유한 1, 무한 1)	1인 이상 50인 이하
의 결 권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정관으로 1주 1표 가능)	1인 1표	1좌 1표
책임범위	유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무한 책임	유한책임
의결기관	주주총회 (1주 1의결)	무한책임사원 동의	사원총회 등 기타 기구 무방	무한책임사원 동의	사원총회
주식 양도 (지분 양도)	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양도 제한 가능)	무한책임사원 동의	다른 출자자 동의 필요(정관으로 자유 양도 가능)	무한책임사원 동의	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양도 제한 가능)
중 요 의사결정	다수결	전원 일치	다수결	전원 일치	다수결

자료: 저자 작성.

지속적인 협력과 인적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당사자는 5가지 형태 중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체를 가진 인적 회사이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의 이점을 누리는 회사이다(임재연 202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주식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을 감안하여(마상진 외 2020: 69)¹² 위 5가지 형태 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와 비교를 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같이 독립한 조직체로서 법인격이 있고, 책임범위도 출자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는¹³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농지 소유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자나 등기이사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는 차이가 있다. 즉 (i) 법적 성격에서 영농조합법인은 인적 결합체이나 농업회사법인은 물적 결합체라는 점, (ii) 설립요건으로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영농조합법

12 농업법인의 법적 형태로 영농조합법인이 45.8%이고 54.2%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48.2%, 합명회사 0.5%, 합자회사 0.2%, 유한책임회사 0.1%, 유한회사 5.1%)이다.

13 이는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6조 제1항).

인은 농업인이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한다. (iii) 의결권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비농업인은 출자한도에 제한없이 출자는 가능하나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이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2항) 출자를 기피할 수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이 인정된다.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90% 이내이나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iv) 지분·지위 양도의 경우에도 농업회사법인은 구성원의 물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분이나 지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정관(이사회 승인)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나, 영농조합법인은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원의 인적 특성이 중요시되고, 조합원 탈퇴 시 조합원 간의 협력이나 새로운 조합원 가입 시 기존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은 없다. (v) 탈퇴(출자금 회수)도 농업회사법인은 탈퇴제도가 없으므로 주식 양도를 통해서만 탈퇴가 가능하나, 영농조합법인은 임의탈퇴와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 등 비임의 탈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vi) 제명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주주의 만장일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주주 제명을 할 수 없으나,¹⁴ 영농조합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결정할 수 있고, 출자 불이행하거나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고, (vii) 지위의 승계도 주식회사는 승계 제한이 없으나 영농조합법인은 지위 승계를 제한할 수 있으나 특약이 있는 경우 승계가 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나, 탈퇴제도가 없어 주식 양도를 통해서만 탈퇴가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소유나 이용, 법인이나 조합원에 대한 세제상의 감면 및 정책상의 지원¹⁵ 등이 있어 농업인들이 법인 설립의 한 형태로 선호하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

1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미국이나 독일은 주주제명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기운(1998)의 “주주제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안암법학 제7호, 안암법학회 참조.

15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이나 농어업의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여러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 농업

법인이나 조합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곡물, 쌀,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 및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당 연간소득 1,200만 원 면제(조특법 제66조 제1항, 동법 제68조 제1항),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등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제66조 제4항, 동법 제68조 제2항),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¹⁶(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식량작물재배업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중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조특법 제66조 제2항, 동법 제68조 제4항) 등이 있다.¹⁷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는 법인의 구성원(주주, 조합원),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2.3. 협동조합

농업인은 농업법인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이나 정책상의 지원 등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형태로 협동조합¹⁸이나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 창출, 복지 증진, 지역 개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기업과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회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김제완 외 2012: 172-173; 김복태 외 2013: 80).¹⁹

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등에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지원사업(보조금, 융자금, 보전금, 출자금 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의거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16 다만,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17 세액면제(감면)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

18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이윤배당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1/3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나, 다만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8조 제1항 제7호)는 점 등으로 인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목적사업이 제한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보다 (일반)협동조합을 더 선호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크게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²⁰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i)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이고, (ii) 법인격이 부여되며, (iii)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iv) 출자 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v)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며, (vi) 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으로는 (i) 설립 절차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주의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주의를 취하며, (ii) 법인 형태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iii) 사업범위에서도 (일반)협동조합은 금융이나 보험업은 금지되나 이외의 업종 및 분야에 제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주민의 권익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사업, 국가·지자체의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4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iv) 법정적립금도 (일반)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해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30%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v) 배당의 제한에 있어서도 (일반)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vi)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에서도 (일반)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을 처리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잔여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국고 등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법인격이 있고, 책임범위도 유한책임이라는 점, 지분이

19 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일단 인증이 되어야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시민사회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고유의 특성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기업의 운영구조의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김제완 외 2012). 이에 따라 상당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어지면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의존형 사회적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김복태 외 2013).

20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나 지위의 양도 시 인적 결합체로서 조합원의 인적 특성이 중요시되고, 조합원 탈퇴 시 조합원 간의 협력이나 새로운 조합원 가입 시 기존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득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i) 설립요건으로 발기인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한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결원 시 1년 이내 충원되지 않으면 해산 사유가 된다.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발기인은 농업인 상관없이 자연인, 법인, 외국인, 외국법인 등 5인 이상이 되면 되고, 다만 법인격 없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니 된다. 또한 결원이 되어도 해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ii) 의결권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비농업인은 출자한도에 제한없이 출자는 가능하나 의결권 없고(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2항), 협동조합은 출자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이다. (iii) 농지 소유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나, 협동조합은 농지취득이 불가하다(김정섭 외 2013: 25).²¹ (iv) 탈퇴도 영농조합법인은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은 임의탈퇴, 비임의 탈퇴, 양도탈퇴가 있다, 임의탈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탈퇴가 가능하나, 양도탈퇴는 총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 등이 참여해야 하고,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는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은 농업인 상관없이 5명 이상이면 되고, 의결권은 1인 1표,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농지취득 불가, 농업법인에 비해 세제상의 감면 및 정책상의 지원 등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설립요건, 가입 및 탈퇴 자유, 유한책임 등의 장점이 많으므로 향후 설립할 법적 형태로 고려해 볼 만하다(이해진 2015).

21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농업법인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등의 농업 경영을 하는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법인에 비해 농지 소유나 이용, 세제상의 지원, 농업 및 농촌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2.2.4. 농업경영체 특성 비교

영농조합법인은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이므로, 이와 유사한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 등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이들 형태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민법상 조합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민법
법인격	○	○	○	×
성 격	인적 결합	물적 결합	물적+인적 결합	인적 결합
설립요건	농업인 5인 이상 *결원 시 1년 내 총원 (미충원 시 해산사유)	농업인 1인 이상	농업인 1인 이상 50인 이하	2인 이상
비농업인 출 자	출자 가능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출자 가능 의결권○	출자 가능 의결권○	출자 가능 의결권○
의 결 권	1인 1표 (정관으로 1주 1표 가능)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정관으로 1주 1표 가능)
책임범위	무한책임→유한책임 전환('15. 7. 7.)	유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주식 (지분) 양도	총회 승인	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양도 제한 可)	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양도 제한 可)	합유자 전원의 동의
탈퇴	- 임의탈퇴(민법 제716조) - 비임의탈퇴 (민법 제717조)	주식(지분) 양도	주식(지분) 양도	- 임의탈퇴(민법 716조) - 비임의탈퇴 (민법 제717조)
지위 승계	승계×(특약○→승계)	승계	승계×(특약○→승계)	승계×(특약○→승계)

자료: 저자 작성.

영농조합법인의 실체에 대해 「농어업경영체법」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같이 인적 결합이라는 점, 조합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으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가 제한된다는 점, 의결권이 1인 1표이나 정관으로 이와 달리 정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정 기재사항 유무, 법인격 유무, 설립요건, 조합원의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의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가 규율되는 데다가 권리능력도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외부관계는 조합채권과 조합채무의 경우에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조합은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의 자산과 책임을 조합원과 구분이나 분리하기 어렵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그 채무는 조합원이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등 법적 쟁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3.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권리

3.1. 조합원의 권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i)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ii) 지분 환부에 대한 청구권, (iii) 조합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 (iv)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v)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vi)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vii) 조합법인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등을 가진다. 특히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인이 아닌 준조합원도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으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2항) 위 권리 중 (iv), (v)을 제외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서 준조합원에게 위 권리 중 (v)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vii) 조합법인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등의 권리를 배제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법인의 장부 등

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3.2.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법률 문제

3.2.1. 의결권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 수익금, 조합원 회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업 시행이 안 되기도 한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영 상태가 어려울 경우 조합원은 추가 출자를 기피하기도 한다. 만일, 추가 출자를 기피하는 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영농조합법인에 추가 출자를 하지 않는 조합원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조합계약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이 조합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체의 일종으로서의 조합에 있어서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제명, 탈퇴, 해산 등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²² 또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명, 이익분배 거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그 출자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채권과 그 연체이자 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 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²³

「농어업경영체법」의 취지나 위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자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제명은 할 수 있으나, 제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추가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조합원이 가지고 의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²⁴ 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되므로

2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2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24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의결권을 박탈하는 경우, 정관에 출자 지분에 따

출자를 불이행한 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사업 운영 등을 위해 비농업인인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준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2항), 비농업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다.

3.2.2.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우리 민법은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민법 제710조)고 정하고 있다. 만일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준조합원에게 본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가 문제가 된다.

우리 민법 710조는 모든 조합원에게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조합원은 본 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하고 재산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김재형 1997). 가령 영농조합법인이 업무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준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조합의 사업은 모든 조합원의 공동사업이고 조합재산은 모든 조합원의 합유재산이므로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 업무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합재산의 재산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본조의 조사권은 업무 집행권의 일부가 아니라 조합원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원이라는 자격에서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만일 특약으로 본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사권을 전혀 갖지 않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관계는 이미 조합이 아니다(김재형 1997).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의결권만 없을 뿐이지 조합원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한이 있고, 본 권리는 준조합원도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합원이라는 자격에서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또한 조합원이 검사권을 행사할 때 법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해산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김재형 1997).

만일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과 준조합원(조합원

라 그 비례대로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음에도 추가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권 등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등)에게 공개한다고 규정한 경우, 조합원 등은 세무조정신고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에 따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⁵ 즉,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 이 판결에 의하면 만일 정관에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 정관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이 비치·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열람·등사청구를 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영농조합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의 임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즉, 민법 제710조의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은 조합업무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합의 재산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점,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조합업무 집행의 적정성, 조합재산 상태의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곤란한데, 회계장부는 열람할 수 없고 세무조정계산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 점, 회계장부 열람권²⁶은 조합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조합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우려보다는 조합업무 운영이나 일부 조합원에게 집중되는 주요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개인보다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2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26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466조에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회계장부열람권은 주주의 무분별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소수주주의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4.1. 조합원의 책임소재와 범위

우리 민법상 조합원은 공동사업의 모든 채무에 책임을 부담하므로 조합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재산을 가진 조합원을 당사자라고 주장할 것이다. 만일,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 채무에 대해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조합원은 제3자이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 민법상 조합 자체의 채무는 곧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 채무에 대하여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으로써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개인재산으로써 책임을 부담한다(김재형 1997: 115).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채권자로 하여금 조합 재산을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는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도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결국 조합 채무는 모든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다. 이 경우 각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그의 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되는지, 또는 조합의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채무가 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책임을 질 뿐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은 그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⁷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도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부담을 한다면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채무 상태가 좋지 않아 부도가 날 경우, 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출자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나 체납 세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조직변경) 시 기존 조합원은 조합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2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이 문제 관련하여 2015년 1월 6일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이 개정되어 조합원의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본 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본 후 조합원의 책임범위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4.2. 조합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 내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와 관리체계 보완 및 영농조합법인의 책임범위 축소(무한책임→유한책임)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2015년 1월 6일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이 있었다(시행은 2015. 7. 7.부터). 개정된 주요 내용은 (i)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전환되었고, (ii)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에는 합병·합자회사로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유한·주식회사로도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iii) 농업법인 목적 사업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것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7. 7.).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2015. 1. 6.)

구 분		종 전	개 정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	- 무한책임	- 유한책임(출자액 한도) *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
	조직변경	- 합병·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가능	- 합병·합자회사+유한 또는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가능
	합병·분할	-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 근거 미비	-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근거 및 절차 신설
농업법인	사업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 농산물가공, 유통·수출, 농작업 대행, 그밖에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 농산물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	- 기존사업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업사업
	관리체계 보완	-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해산명령 청구 가능	-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 -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 가능 - 해산명령 청구요건 보완 - 과태료 부과 신설

자료: 저자 작성.

4.3. 조합원의 책임범위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2015. 1. 6.)으로 조합원의 책임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2015. 7. 7.) 후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므로 채무의 발생 시점(예컨대 소급적용이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4.3.1.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후(2015. 7. 7. 이후) 발생한 채무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법률 제12961호)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7조 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²⁸ 이 판결의 사안은, 甲 영농조합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18억 원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 3억 1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2015년 7월 7일부터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 채무에 대하여 손실 부담 비율대로 또는 균분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했으나, 개정 규정으로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 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

28 전주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3.2.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전(2015. 7. 7. 이전) 발생한 채무

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기 전(2015. 1. 6. 법률 제12961호)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²⁹ 대상판결의 사안은, 甲이 乙영농조합법인에게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 6일까지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甲이 乙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甲이 乙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제15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합 관련 규정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상법 제212조(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개인이 민법상 조합의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실시하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³⁰

29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인 구 「농어업경영체법」(2009. 4. 1. 법률 제9620호)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도 위 사안에 대해,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 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다.³¹

또한 우리 대법원은 조합원 중에 외국법인이 있어서 준거법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甲영농조합법인이 별장식 휴양타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외국법인과 휴양타운의 분양 및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2011년 12월 1일과 2012년 9월 10일, 총 2차에 걸쳐 체결하였는데, 乙법인이 甲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甲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3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본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진관, 2018.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 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115호, 법원도서관, 215-231면 참조.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甲 법인의 구성원인 丙 등이 甲법인의 채권자인 乙 법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는 甲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인 甲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변제 책임을 지는데, 甲법인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위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丙 등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乙 법인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³²

이와 같이 2015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법 개정 전에는 조합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우리 대법원도 대부분 소액사건에 관한 것으로 조합원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과 부정한 판결 모두에 대해 상고기각한 판결이 선고(이진관 2018)³³ 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는 없었으나,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개정된 조문의 반대해석상 지금의 판례 법리를 대법원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의 채무 변제를 위해 대표자가 개인 재산을 출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출자하여 조합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나머지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들은 대표이사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이때에도 각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 발생 일시(2015. 7. 7. 전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구상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거나 출자가액을 한도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4.3.3. 조직변경 시 조합원의 책임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조합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충원하여야 하며, 미충원 시 해산 사유가 된다. 특히 법인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법인 운영에 대

3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33 조합원의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각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6297 판결, 대법원 2013. 11. 11. 선고 2013다4675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 1732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8031 판결 등이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각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6426 판결이 있다.

한 갈등 등으로 탈퇴를 하는 경우 조합원 5인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조합원의 탈퇴 및 기타 문제로 조합법인의 운영 및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법인을 해산, 청산하기보다 영농조합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³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조직변경)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직변경 전 발생한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가 된다.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어느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³⁵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하며(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3항).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4항). 채권자 보호절차로 총회결의(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1항), 채권자 공고(동법 제18조 제5항), 이의제기 시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6항),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7항).

그렇다면 조직변경 등기³⁶ 전에 발생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기존

34 이에 대한 예로, 직불금 수령권이나 인허가관계에서 영농조합법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이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5 농어업경영체법 개정(2015. 1. 6.)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고(개정 전에는 합명·합자만 가능), 2018. 12. 24. 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로도 조직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로, 2011. 4. 14. 개정상법에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되었지만, 2015. 1. 6.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 이러한 상법의 개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2018. 12. 24. 법 개정 시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6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을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8항).

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9항).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앞에서 살펴본 판결에서³⁷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조합원의 책임은 개정법 시행(2015. 7. 7.) 전후를 기준으로 개정 전에는 무한책임, 시행 후에는 출자액 한도로 책임(유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시행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조직변경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직변경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가혹할 수 있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변경 시 새로 가입한 자가 아니라 기존 조합원으로 있다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자이므로,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직변경만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즉시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조직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법제는 타당하다.

4.3.4. 출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 조합 재산 자체에는 불가하나³⁸ 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14조).

그런데 우리 민법 제273조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채권자도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273조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받을 권리에 한하여 효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김재형 1997). 즉,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압류된 지분 자체를 경매 등 방식으로 환가하여 그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환가도 합유지분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3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38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4.4.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책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부당 유출하거나 자산을 유용하거나 조합의 기회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등 이해상반행위를 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대리권이 있는지,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행위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우리 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소유 토지를 연대보증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³⁹ 즉, 위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이익과 대표이사인 甲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여 甲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체결은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甲은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인 甲이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乙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민법 제709조, 제124조가 적용되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우리 대법원도 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⁰ 이 판결에 의하면, 우선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그

39 대구고등법원 2017. 9. 27. 선고2017나22378 판결.

40 대법원 2018. 4. 12. 선고2017다271070 판결.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고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민법 제709조에 의해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에는 대리권이 없다고 본 점,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법인을 대리한 경우에는 무권대리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4.5.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이행을 한 경우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제3자가 채무이행 중에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면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우리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⁴¹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 되지 않는다.⁴²

우리 대법원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이행보조자의 과실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⁴³ 이 판례의 사안은, 甲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乙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甲이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乙 법인의 이사가 丙에게 부탁하여 甲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甲이 丙의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 乙의

4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42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4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부탁으로 원고 甲에게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채무의 이행 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 활동을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며, 乙법인의 이행보조자인 丙이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乙 법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행보조자인 丙은 乙법인의 부탁으로 甲에게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 활동을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또한 乙법인은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수준에 맞게 말과 안전장비(헬멧, 신발)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말 조련사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적절한 안전교육과 수준별 승마 지도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행보조자인 丙은 甲을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甲의 능력과 신체 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乙법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甲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5. 결론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본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 유무, 설립요건, 책임범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유사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영농조합법인이 부도나 폐업 시 조합원은 법인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이해상 반행위에 대한 책임 및 조직변경 시 조합원의 책임범위 등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등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조합원의 법인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이나 감사 등에 대한 권리를 배제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각 조합원은 법인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0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각 조합원은 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된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채무는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부담하면 되나, 2015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은 개정법 시행(2015. 7. 7.) 전후를 기준으로 개정 전에는 무한책임, 시행 후에는 출자액 한도로 책임(유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7일 시행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조직변경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직변경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가혹할 수 있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변경 시 새로 가입한 자가 아니라 기존 조합원으로 있다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자이므로,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직변경만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즉시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대표이사)이 법인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우리 민법은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민법 제709조),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민법 제124조) 이와 같은 이해상반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영농조합법인에 효력이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과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 등이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률관계도 중요하지만, 설립 후 운영상의 법률 문제, 즉 조합법인의 재무 상태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출자를 기피하는 경우,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부담하며, 추가 출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조합법인 운영에 핵심적인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탈퇴

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승계를 요청하거나 지분 환급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합원 갈등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참고 문헌

- 곽윤직. 1997. 『채권각론』. 박영사.
- 김복태, 이은국, 정수현. 201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김재형. 1997. 『민법주해 [XVI] (채권 9)』. 박영사.
- 김정섭, 김미복. 2013.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설립동향과 제도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제완, 정태길, 양동수. 201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조』 제61권 제5호 (2012. 5.). 법조협회.
- 남기윤. 1998. “주주제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안암법학』 제7호. 안암법학회.
- 뉴시스. 2021. 5. 6. “부실 농업법인이 운영법인 수 추월...제도개선 시급.”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6_0001431555&cID=10201&pID=10200>.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19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 마상진, 안석, 김유나. 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머니투데이. 2021. 5. 10. “농업법인 일탈 잇따라...시대변화 맞는 혁신주체로 거듭나야.” <<https://news.mt.co.kr/mtviw.php?no=2021051012212634790>>.
- 송옥렬. 2021. 『상법강의(11판)』. 홍문사.
- 아주경제. 2021. 5. 14. “부실 농업법인 난립 농업법인 내실화 나서야 할 때.” <<https://www.ajunews.com/view/20210514075229150>>.
- 이진관. 2018.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 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관례해설』 제115호. 법원도서관.
- 이해진. 2015.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의 법률문제.”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 비교사법학회.
- 임재연. 2020. 『회사법Ⅱ(개정판7판)』. 박영사.
- 통계청. 2021. 『농업법인 조직형태 및 사업유형별 현황(2000~2019)』.
- 통계청. 2021. 『농업법인의 조직형태 및 법인당 출자자·중사자 현황(2000~2019)』.

원고 접수일: 2021년 7월 29일
원고 심사일: 2021년 8월 23일
심사 완료일: 2021년 9월 21일